# "모든 가족, 모든 가<del>족구성원을 존중하는</del> 사회"를 위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김민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현재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비혼 동거·출산 등 가족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가족변화를 반영하여, 정책의 패러다임을 다양성·보편성·성평등 관점에 두고,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하여,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시행할 계획임.

기본계획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한부모 등 핵심 지원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1인 가구 증가, 가족 생애주기 변화 등을 반영한 보편적 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남녀 모두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조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담았음.

# 1. 들어가며

지난 4월 27일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가족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1~2025)」을 발표하였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은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기본계획은 가족 다양화, 개인화, 가족기능 약화 등 급격한 가족변화를 반영하여, 정책의 패러다임을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 관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의 수립배경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가족변화의 현황과 전망

## 가. 가족 구성과 형성방식의 다양화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 2인 이하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 전체가구의 58.0%에 달하며, 최근까지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어 왔던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가구 비중은 2019년 29.8%(10년 37%)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혼인과 출산의 감소, 만혼 현상의 고착화로 가족 구성이 지연되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변화 등과 맞물려,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를 넘나들거나, 자녀 양육기와 노년기가 중첩되는 등 가족의 생애주기가

다변화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69.7%가 '혼인·혈연관계가 아니 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인식 하고, '비혼동거'에 대한 1030세대의 동의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등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30.9%, 한부모 가족의 16%가 차별받은 경험1)이 있을 정도로 개별 가족들이 느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 전하고, 한부모가족 빈곤율은 전체가구 12.6% 대비 무려 22.7%p 높은 35.3%로 매우 높은 상 황이다.

한편 부양, 돌봄 등 가족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돌봄시설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자녀돌봄의 공백, 실직·휴업 등 일자리 불안과 저소득층 가족의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과 계층화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가족 내 개인 가치 부각. 일·생활 균형에 대한 욕구 증대

전통적 개념의 확대가족에 기반을 둔 집단으로 서의 가족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으며,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 분담해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 비율이 남녀 모두 10년 전보다 20%p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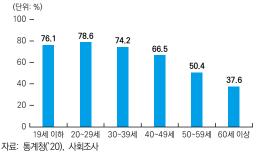
[그림 1] 가구 구성



[그림 3]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동의

(단위: 천 건, %) -○- 혼인건수 -○- 조혼인율 - 8 350 -326.1 0 302 8 6.5 300 -5.9 - 6 250 -Ö O 47 2010년 2015년 2019년 \* 조혼인율: 인구 1천명당/혼인건수, 통계청('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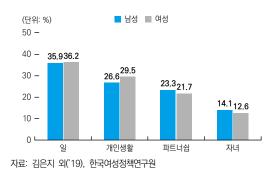
[그림 2] 호인거수 및 조호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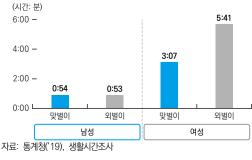
[그림 4] 비혼동거에 동의

<sup>1) &#</sup>x27;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 정 책 동 향



[그림 5] 청년세대 생애과업 비중 인식



[그림 6] 성별 가사노동 시간

상 증가2)하는 등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으나, 실제 맞벌 이 부부의 1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2019년 기준 여성 3시간 7분, 남성 54분으로 인식과 현실 간의 간극이 매우 크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히 청년세대의 경우, 남녀 모두 '가족'보다 '일'과 '개인생활'을 중시 하고, 가족 안에서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부담 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인프라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제도의 지속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로관행3),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의 제도 활용 어려움 등으로 가족과 여성의 돌봄 부담 체감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 3.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및 정책체계

제4차 기본계획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 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고,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 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해 나가되 '보편적 가족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하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모든 가족, 모든 구성 원을 존중하는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가족 다 양성 인정'과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①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②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③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④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의 4개 영역 별로 정책 과제를 마련하였다.

# 4. 영역별 주요 정책과제

# 가.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 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미혼부 자녀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사랑이법"의 후

<sup>2) &#</sup>x27;부부가 공평하게 가사 분담해야 한다'에 동의 : (2010년) 남성 31.2% 여성 42.2% → (2020년) 남성 57.9%, 여성 67.0%(통계청, 사회조사)

<sup>3)</sup> 연평균 노동시간 : OECD 평균 1,734시간 / 한국 1,967시간(2018년 기준)



[그림 7]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체계

속 조치4)로,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와 모의 비협조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최근 그 요건을 완화5)하여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혼모가 자택 등에서 홀로 출산하는 경우 자 녀 출생신고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비, 상담, 출 생신고절차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올해부터 실 시하고,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신속한 출생신고가 되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 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도입을 추진한다.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과 불편

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姓) 결정 방식6)을 개선,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상 '혼인 중의 자', '혼인 외의 자',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7)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차별과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용어 개선,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와 「민법」 제779조에 규정된 가족의 정의 및 범위 규정8)을 혼인・혈연・입양 이외의 다양 한 가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 의 개정을 검토한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sup>4) 2015</sup>년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제 57조제2항 신설)이 만들어져 모(母)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혼부가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미혼부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 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sup>5) (</sup>기존)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 (개선)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비협조 등으로 신고하는데 장애가 있는 경우 등 포함

<sup>6)</sup> 현행「민법」제781조는 자녀는 부(父)의 성(姓)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 신고 시 모의 성을 따르는 것으로 협 의한 경우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up>7) (</sup>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005) '건강가정'과 상반되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유발시킬 수 있어 중립적인 법률명으로 수정 필요

<sup>8) 「</sup>건강가정기본법」(제3조)의 '가족'정의 :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아울러 정부 간행물, 대중매체 등에서 가족 형태에 따른 편견 및 차별적 표현 등을 점검·개 선하기 위해「가족 다양성 모니터링 사업」을 본 격적으로 실시한다.

#### 나.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우선,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만 24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하였다. 임대주택 물량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 등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이혼 과정의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면접교섭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지속적 교류와 관계 맺음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법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 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하여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변경하고, 채무의 '일부'이행 시에도 감치명령》이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추가적 방안을 마련하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양육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속에서 배제하는일명 "구하라법"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영유아기·학령 기 자녀를 위한 방문교육 및 언어발달 지원, 청 소년기의 이중언어 역량 개발 및 중도입국 청소 년의 조기 적응 지원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특히,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 비 지원을 만24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청 소년 부모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등 자녀 양육, 학업 지속 및 생활안정을 위한 종 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지역 기반의 통합적·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사회에서 돌봄 및 교육·상담·소통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설치하고, 자치단체와 가족센터간 협력을 통해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취약·위기가족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가족역량강화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을 통한 정보 제 공, 초기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온라인·화상 상담 등 비대면 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다.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우선,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한다. 1인 가구의 고독·고립 방지 등을 위한 청년, 중장년층, 고령층 등의 생애주 기별 사회관계망 지원10) 사업을 새로이 실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11) 모델을 개발·확산할 예정입니다.

청년 ▶ 사회 진입 예정자 대상 정서·경제·생활유지 등 독립생활 준비교육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자기돌봄 및 일상생활 유지관리 교육, 생애후반기 진입 준비 프로그램
가사, 가정관리 등 일상생활의 돌봄기술 교육, 심리상담, 재산, 인생되돌아 보기, 노년 준비 프로그램

<sup>9)</sup>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함(「양육비이행법」 제18조, 「가사소송법 제68조) 10)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예시)

<sup>11)</sup>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돌봄을 매개로 활동하는 지역 공동체(품앗이형, 마을공동체형, 주민경제조직형 등 '21년 12개 지역 45개 공동체 활동 지원)

돌봄 대상, 소득수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 여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서비스 유 형 및 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 육 아도우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범죄 경력, 건 강상태 등 신원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과 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돌봄의 질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공적 돌봄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가족돌봄자 지원을 추진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초등 온종일 돌봄 등 마을과 학교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녀돌 봄 공간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한 협력 돌봄 모델을 확산한다.

공공부문 돌봄종사자를 확충하고, 돌봄종사 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노인, 자녀 등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소진 방지를 위한 치매가족 휴가 제, 가족돌봄자 연결망 및 심리·정서적 지원 프 로그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라.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

일하는 사람의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이용 활성화로 돌봄친화적 일터를 조성한다. 육 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 나가고, 육아휴직 급여를 '22년까지 최대 월 15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특히, 만 0세 이 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22년부터 부·모 모두 각 3개월씩 최대 월 3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조 정 할 예정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 등 가족친화경영의 장점 을 기업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관광·문화·의료·생활 분야 혜택 등 가족친 화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육아 휴직, 대체인력제도 등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 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가족친화 컨설팅을 집 중 지원하다.

성평등한 돌봄의 확산,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노력을 강화하여 남・녀 모두에게 일과 생활, 돌봄이 조화로운 사회 여건을 조성한다. 자녀를 돌보는 남성에게 관련 정보, 자조모임,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고, 남성돌봄자 사례 공모, '맞살림· 맞돌봄' 온라인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보급함으 로써 평등한 돌봄을 확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시설, 서비스 등을 돌봄친 화적으로 개선하고, 가족·개인 단위 이용이 가능 한 비상업적 일시 돌봄・휴식 공간 등에 대한 접 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 5. 나가며

이번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지난 5월말에 발표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 인가구는 '15년 21.3%에서 '20년 30.4%로 그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비혼 독신과 동거, 무자 녀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동의 비율12)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대 의 절반은 비혼(53%), 비혼동거(46.6%), 무자녀 (52.5%)에 동의하고 있으며, 세대간 인식 격차 가 매우 커 향후 가족 형태 및 생애주기 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혼과 출산, 가족 구성 등 개인의 삶을 둘러싼 시대변화와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를 고 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가족 다양성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

## 정 책 동 향

하되, 혼인과 출산, 가족구성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가족과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고, 차별과 배제, 낙인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서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마련한 법과 제도,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고 싶다.